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76 발의연월일: 2022. 11. 22.

발 의 자:권은희·金炳旭·배현진

안민석 · 안철수 · 유경준

유기홍 • 이태규 • 최연숙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 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위한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의 교육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

<u>할 수 있다.</u>